



손해보험의 이해 15: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김동겸 선임연구원

- 정책성보험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의무보험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¹⁾
 - 의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없으나, 어선원재해보험은 예외적으로 보험료 중 일부가 지원됨.
 - 반면, 임의보험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임의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무상복구 피해지원제도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음.

- 의무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대인배상¹으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 임의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어선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이들 보험에 대한 가입은 가입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짐.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이며, 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협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원수보험사로 참여하고, 민영손해보험회사는 재보험사로 참여함.

1) 2008년 1월 기준으로 30여종의 정책성보험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2006년 5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지역²⁾을 대상으로 판매를 개시함.
-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 설해 등과 같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및 축사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1997년부터 시행됨.
 -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시가의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표 1〉 정책성보험 주요 상품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 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시행일자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법	과수재배농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농림부	01.01.26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법	주택 등 시설소유자	태풍, 홍수 등	소방방재청	06.05.15
가축재해보험	축산법	축산농가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가축피해	농림부	97.01.01
어선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장보험법	어선 소유	어선의 재물손	해양수산부	04.01.01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	건설교통부	63.04.04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사업자	법률상 배상책임	과학기술부	69.01.24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상해, 질병, 귀국비용 등	노동부	04.08.16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기관의 장	연구활동 중 상해사고	과학기술부	06.04.01

자료: 1) 금융감독원(2006),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보험 참여현황」.

2) 이동우(2008),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9개 시·군 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임. 한편, 2008년에는 가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 현재 보험사업자는 기존의 동부화재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등 총 4개사로 확대함.